

신청 기한

2016년 2월 5일(금)[소인 유효]까지!

※급부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인의 날짜가 우편함에 투입한 날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 직전에 제출하게 되면 소인의 날짜가 신청 기한 후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절차

전년도에 요코하마시에
임시 복지 급부금을 신청한 분
(대리인 신청 등 일부는 제외)

그 외의 분
(전년도 요코하마시에 임시 복지 급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 · 대리 신청자 등)

① 신청서를 기입한다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신청서 기재 예는 '임시 복지 급부금 안내' 뒷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뒷면의 **파란색** 글자 부분이 기재 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② 서류를 체크한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 뒷면의 '첨부 서류 일람'을 확인해 주십시오.

③ 서류의 원본을 준비한다

■ 보험증 등 본인 확인 서류(양면 · 전원)

■ 신청 수급자의 통장 또는 현금카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전원)와 대리인 본인의 확인 서류, 이체를 원하는 통장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④ 서류를 복사한다

서류의 원본을 복사해 주십시오. 자택에서 복사할 수 없는 분은 인근의 편의점 등에서 복사해 주십시오.

⑤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 반송해 주십시오.



② 신청서를 송부한다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 반송해 주십시오.
첨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부금의 수급에 관해

-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지급이 결정된 분은 신청서에 기입한 지정 계좌로 급부금이 이체됩니다. 또한 지급은 10월 이후 1회에 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심사 결과 통지서 송부까지는 1~2개월 정도 걸리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지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기입한 신청서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첨부한 서류에 부족함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계좌이체에 관해

계좌이체에 관한 주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통장 등을 복사한 부분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 통장의 첫 페이지 등, 계좌번호와 명의인의 '카타카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카타카나를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유초은행으로 이체를 희망하는 분에게

유초은행 계좌로 이체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체용 지정명 · 예금종류 · 계좌번호 · 계좌명의(카타카나)가 필요합니다. 이체 계좌명 · 계좌번호는 유초은행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인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초은행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법

※ 뒷면에 알림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용지는 소중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 궁금하신 내용은 요코하마시 임시복지급부금 전용 다이얼로 문의해 주십시오.

파란색 부분은 기입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1 날짜를 기입해 주십시오.

2 낮 시간 동안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3 신청서 뒷면에 있는 서약·동의 사항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주십시오.

4 2015년 1월 1일 시점에서 부양자 등의 주민표 주소지가 요코하마시 내인 경우, 신청서 뒷면의 서약·동의 사항 ①②에 동의한 후, 【부양자 등】의 성명, 후리가나, 생년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5 작년도의 입금 계좌가 있는 경우는 **A**, 그외의 계좌를 희망하시는 경우, 또는 작년도에 요코하마시에서 지급하지 않은 분(부지급이었던 분도 포함합니다)은 **B**에 송금받을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입해 주십시오.

유초은행 계좌로 이체를 희망하실 경우, 이체용 지점명·예금종류·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체용 지점명·계좌번호는 유초은행 창구에서 통장에 인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유초은행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様式2(第6条関係)
個人用 臨時福祉給付金 申請書
 Individual Use

※この申請書は、単身世帯の方など、ご自身で申請・受給をされる場合にご利用ください。
 ※同一の世帯にいる方を代理して、申請されるときは、「申請書(世帯用)」を使用してください。

横浜市長宛 ※裏面の事項①～⑦に誓約・同意のうえ、下の欄に署名をお願いします。

1 申請・受給者 Applicant/Beneficiary **1** 記入日 Date of entry 平成 27年 8月 10日 **2** 優先電話番号 / P.H 045 (671) 0000

住所 Address 横浜市市中区港町1-1
 (平成27年1月1日の住民票所在地) ※上記と同じ場合は記載不要
 横浜市鶴見区鶴見中央〇〇-〇

3 氏名 Name 横浜 太郎
 フリガナ ヨコハマ タロウ
 横濱 太郎
 生年月日 Date of birth 昭和20年1月1日

2 扶養者等 Supporter ※裏面の誓約・同意事項①②に誓約・同意のうえ、下の欄に署名をお願いします。
 扶養者等とは上記【1】の申請・受給者の「税の扶養申告された方」[16歳未満である場合、生計を一にする保護者]「専従者給与を受けている場合の専従者給与支払者」です。
 また、扶養者等が市外にお住まいの場合は、扶養者等の平成27年度分の市民税非課税証明書の添付が必要です。

4 扶養者等 (フリガナ) / (Furigana) 氏名 / Name 生年月日 Date of birth 住所 / Address (平成27年1月1日時点の住民票所在地を記載) (Write the location of the residence certificate as of January 1, 2015)
 ヨコハマ ハナコ 西暦: 明治 大正 昭和 平成 横浜市神奈川区広台〇-〇
 横濱 花子 23年 12月 31日 電話 045 (411) 0000
 ※記名押印に代えて署名することができます。

3 振込口座 Bank Account for Transfer
 前年度の振込口座がある場合は、**A**となります。それ以外の口座をご希望の場合、または、前年度に横浜市から支給されていない方(不支給となった方も含みます)は、**B**となります。お問い合わせ先は、横浜市臨時福祉給付金専用ダイヤル(045-671-0000)です。

A 前年度に臨時福祉給付金が振り込まれた口座と同じ口座
 (前年度に臨時福祉給付金が振り込まれた口座に限り、振込口座を希望する場合は、横浜市臨時福祉給付金専用ダイヤルにお問い合わせいただいてもお答えできませんのでご了承ください。)

B 申請・受給者の口座に限り、振込口座を希望する場合は、横浜市臨時福祉給付金専用ダイヤル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5 金融機関名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支店名 / Branch name 分類 Type 口座番号 (右詰めでお書きください) Account number 口座名義 (カナ) Account holder
 横浜駅前 本・支店 1 普通 1 2 3 4 5 6 7 ヨコハマ タロウ
 1.銀行 2.金庫 3.信組 4.信連 5.農協 6.協同 7.信漁連 1 2 3 2 当座

4 代理申請・受給を行う場合 Application by proxy / when receiving payment ※記名押印に代えて署名することができます。
 (フリガナ) 申請・受給者との関係 Relationship with the applicant/payment recipient 代理人生年月日 Date of birth of the proxy 代理人住所 Address of the proxy
 代理人氏名 / Name of the proxy 1.同一世帯 2.法定代理人 3.その他 西暦: 明治 大正 昭和 平成 年 月 日 電話 () ()

どちらかのチェック欄(□)に【✓】を入れてください。
 上記の者を代理人と認め、臨時福祉給付金の I hereby recognize the person listed above as my proxy, and entrust temporary welfare benefits payments to them.
 申請 / Application
 申請及び受給 / Application/payment receipt

※申請・受給者との関係 (代理申請・受給が可能な方一覽)
 1. 同一世帯:平成27年1月1日時点での支給対象者の属する世帯の世帯構成者
 2. 法定代理人:親権者、未成年後見人、成年後見人、代理権付与の審判がなされた保佐人及び代理権付与の審判がなされた補助人
 3. その他:市長が特に認める方